

[붙임 1]

‘25년도 인천 액화수소설비 관리운영 용역 3차 기간제 계약직 채용 공고

우리공사에서 다음과 같이 기간제 계약직원을 채용하고자 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5년 10월 28일

한국가스기술공사 사장

1. 채용내용

- 고용형태 : 기간제 계약직
- 채용인원 : 2명(운전원 1명, 사업지원 1명)
- 공공부문 비정규직 가이드라인('17.7월) 및 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에 따라 **정규직 전환 대상이 아님**
- 근무조건 및 급여수준

| 채용분야 | 근무조건 | 급여수준(월, 세전) |
|------|----------------------------------|-------------|
| 운전원 | 4조 3교대, 24시간 교대근무 가능자 (탄력근로제) | 3,930,500원 |
| 사업지원 | · | 3,201,060원 |

- ※ 운전원 근무형태 : 1일 24시간, 3개 조를 기준으로 근무시간을 정해 1개 조씩 교대로 투입하는 근무형태
- ※ 근무 기간 중 기관 사정에 따른 탄력근무제 도입으로 소정근로시간 등은 조정될 수 있음
또한 근무형태, 근로시간은 관련 법령 및 기준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 상호협약에 의해 변동가능
- ※ 퇴직 시 퇴직급여 별도 지급(단, 1년 미만 근무 시 퇴직급여 미지급)
- ※ 기본급, 성과급 등을 모두 포함한 지급액(연장 및 휴일근로, 야간근로 시 실적에 따른 수당 정산 지급)
- ※ 기간제근로자 임금 지급 기준 개선으로 인하여 보수금액이 변경될 수 있음

채용분야 및 인원

| 채용분야 | 업무내용 | 인원 | 계약기간 | 근무지 |
|------|--|----|------------------------------|-----|
| 운전원 | - 생산설비 운전 및 충전 업무 | 1명 | 12개월 (‘26.1.2~’27.1.1.) | 인천 |
| 사업지원 | - 플랜트 도면 작성 및 수정 - 인사, 재무, 회계업무 등 사무업무 보조 | 1명 | 12개월 (‘25.12.9~’26.12.8.) | 인천 |

- ※ 근무기간 중 기관 사정에 따라 업무 내용이 조정될 수 있음
- ※ 근로계약 연장 : 별도의 동일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 평가를 통하여 총 2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음(단, 55세 이상은 1년 단위 사업 종료일까지 연장 가능)
단 계약 만료 2개월 전 「기간제 계약직원 채용 및 운영기준 개정」 「근무성적평정표」의 총점이 80점 미만인 경우 연장계약을 하지 아니함

※ 숙소 미제공

□ 직무수행내용

| 채용분야 | 직무수행내용 |
|------|--|
| 운전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소액화 시스템 운전절차서 작성 및 수소액화 시스템 운전, 충전 ○ 수소액화 시스템 운전절차서에 따라 수소액화시스템의 온도, 압력, 유량 등의 계측값 모니터링 ○ 수소액화 시스템 운전절차서에 따라 수소액화시스템의 정상운전이 가능하도록 수소액화 시스템을 조정 ○ 비정상 상황별로 운전절차서에 따라 수소액화시스템 제어 |

□ 응시자격 및 우대/가점사항

| 구 분 | 자 격 기 준 |
|----------------|---|
| 응시자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령, 성별, 학력, 전공 등 제한 없음(공고일 기준 미성년자 제외) ※ 병역법 제76조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으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 '26. 1. 2(금)부터 근무 가능자 (공사사정에 따라 변동가능) • 우리공사 인사규정 등 결격사유 없는 자 • 교대근무 가능자 |
| 우대사항 (서류전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기능사 이상) • 천연가스 및 수소플랜트 유지보수 및 운전경력(7년 이상부터 반영) • 액화수소 플랜트 설비 운전경력(1개월 이상부터 반영) ※ 경력인정 필수요건 및 우대/가점사항 상세표 참고 |
| 가점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관계법률에 따른 가점 대상자(전형단계별 만점의 5% 또는 10%) (동법 제31조에 따라 가점합격자 상한제 적용 : 채용인원 3명 이하인 경우 보훈대상자 가점 미적용. 단,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등록자 (전형단계별 만점의 10%) * 단, 서류전형 원점수로 4할 미만인 경우 취업지원대상자 및 장애인 등록자 가점 미부여 * 단, 면접전형 원점수로 4할 이상인 경우 가점 부여(가점 포함 총점 6할 미만인 경우 과락) |

※ 경력인정 필수요건

- (업체발급경력 증명서의 경우) 경력증명서상 지원자격(경력)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경력분야 및 근무기간을 명확히 기재(확인 불가시 경력 불인정)
- 천연가스 및 수소플랜트 유지보수 및 액화수소설비 운전 경력에 따라 차등으로 점수 부여
- 비정규직(인턴, 파견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등) 근무기간 인정

※ 숙소 미제공

□ 우대/가점사항 상세표(운전원)

| 구 분 | | 평가기준 | 비고 |
|--------------|---|--|---|
| 자격증 [30점] | 30점 | • 기술사 또는 기능장 | 1)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별표2 16(기계), 18(화학) 20(전기·전자) 분야만 인정 2) 자격증 다수 보유 시 상위 자격증 1개 인정 |
| | 20점 | • 기사 | |
| | 15점 | • 산업기사 | |
| | 10점 | • 기능사 | |
| 경력 [70점] | 20점 (A) | • 천연가스 및 수소플랜트 유지보수 및 운전경력 7년 이상분에 대해 개월수로 점수 산출 - 산식 : 경력(개월) × 0.5점 (최대 20점) ※ 액화수소 플랜트 설비 운전경력 제외 | 1) 근무일 수 및 자격증은 원서접수 마감일까지만 인정('25.11.11.) 2) 정규직, 인턴, 기간제 등 근무형태 무관 3) 네이버 날짜계산기를 통한 월수 산출 및 반영 4) 경력점수 = A + B + C |
| | 40점 (B) | • 액화수소 플랜트 설비 운전경력 1개월 이상분에 대해 개월수로 점수 산출 - 산식 : 경력(개월) × 2점 (최대 40점) | |
| | 10점 (C) | • 천연가스 및 수소플랜트 유지보수 및 운전경력 (7년 미만) 지원자 전원 기본 점수로 10점 부여 예시) 7년 미만 시 10점 부여 7년 이상 시 10점 + 추가 경력점수(A + B) 부여 | |
| 계 | | 100점 | |
| 가 점 (20점) |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관계법률 대상자 | | 5점 또는 10점 |
| | ②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 | 10점 |
| |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관계법률에 따른 가점 대상자 (전형단계별 만점의 5% 또는 10%) * 단, 동법 제31조에 따라 가점 상한제 적용 - 채용인원 3명 이하인 경우 보훈대상자 가점 미적용. - 단,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등록자 (전형단계별 만점의 10%) • 취업지원대상자 및 장애인등록자 중복의 경우 모두 적용 * 단, 서류전형 원점수로 4할 미만인 경우 취업지원대상자 및 장애인 등록자 가점 미부여 | |

□ 직무수행내용

| 채용분야 | 직무수행내용 |
|------|---|
| 사무보조 | ○ 플랜트 도면 작성 및 수정(AutoCAD) ○ 인사, 재무, 회계업무 등 사무업무 보조 |

□ 응시자격 및 우대/가점사항

| 구 분 | 자 격 기 준 |
|----------------|---|
| 응시자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령, 성별, 학력, 전공 등 제한 없음(공고일 기준 미성년자 제외) ※ 병역법 제76조(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으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 '25. 12. 9(화)부터 근무 가능자 (공사사정에 따라 변동가능) • 우리공사 인사규정 등 결격사유 없는 자 |
| 우대사항 (서류전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학사 이상 • 천연가스 및 수소플랜트 사업지원 분야 근무경력이 있는 자(5년 이상부터 반영) • 컴퓨터활용능력, 워드프로세서(과거등급의 경우 동일 점수로 반영) 자격 우대 ※ 경력인정 필수요건 및 우대/가점사항 상세표 참고 |
| 가점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관계법률에 따른 가점 대상자(전형단계별 만점의 5% 또는 10%) (동법 제31조에 따라 가점합격자 상한제 적용 : 채용인원 3명 이하인 경우 보훈대상자 가점 미적용. 단,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등록자 (전형단계별 만점의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서류전형 원점수로 4할 미만인 경우 취업지원대상자 및 장애인 등록자 가점 미부여 * 단, 면접전형 원점수로 4할 이상인 경우 가점 부여(가점 포함 총점 6할 미만인 경우 과락) |

※ 경력인정 필수요건

- (업체발급경력 증명서의 경우) 경력증명서상 지원자격(경력)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경력분야 및 근무기간을 명확히 기재(확인 불가시 경력 불인정)
- 천연가스 및 수소플랜트 사업지원 분야 관련 경력에 따라 차등으로 점수 부여
- 비정규직(인턴, 파견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등) 근무기간 인정

※ 숙소 미제공

□ 우대/가점사항 상세표(사무보조)

| 구 분 | | 평가기준 | 비고 |
|--------------|---|--|--|
| 학력 [20점] | 20점 | • 학사 이상 | 졸업증명서 제출 必 |
| | 15점 | • 전문학사 | |
| | 10점 | • 고등학교 졸업 및 기본점수 | |
| 자격증 [20점] | 20점 | • 워드프로세스와 컴퓨터활용능력 모두 취득 | 과거 등급의 경우 동일 점수로 반영 |
| | 15점 | • 워드프로세스 또는 컴퓨터활용능력 취득 | |
| | 10점 | • 자격증 없음 | |
| 경력 [60점] | 50점 (A) | • 천연가스 및 수소플랜트 사업지원 분야 근무경력 (5년 이상분에 대해 개월수로 점수 산출) - 산식 : 경력(개월) × 0.75점 (최대 50점) | 1) 근무일 수 및 자격증은 원서접수 마감일까지만 인정('25.11.11.) 2) 정규직, 인턴, 기간제 등 근무형태 무관 3) 네이버 날짜계산기를 통한 월수 산출 및 반영 4) 경력점수 = A + B |
| | 10점 (B) | • 천연가스 및 수소플랜트 사업지원 분야 근무경력 (5년 미만인 자) - 지원자 전원 기본 점수로 10점 부여 예시) 5년 미만 시 10점 부여 5년 이상 시 10점 + 추가 경력점수(A) 부여 | |
| 계 | | 100점 | |
| 가 점 (20점) | 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관계법률 대상자 | | 5점 또는 10점 |
| | ②「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 | 10점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관계법률에 따른 가점 대상자 (전형단계별 만점의 5% 또는 10%) * 단, 동법 제31조에 따라 가점 상한제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용인원 3명 이하인 경우 보훈대상자 가점 미적용. - 단,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등록자 (전형단계별 만점의 10%) • 취업지원대상자 및 장애인등록자 중복의 경우 모두 적용 * 단, 서류전형 원점수로 4할 미만인 경우 취업지원대상자 및 장애인 등록자 가점 미부여 | | |

2. 전형절차 및 일정

□ 전형절차

- 1차전형(서류)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우대요건 평가(동점자 전원 합격처리)
- 2차전형(면접) : 직무수행능력, 관련분야 경험 등 질의 응답 (인성 및 역량평가)
-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점수 가점포함 6할 이상인 자 중 서류전형, 면접전형 합산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서류30%, 면접 70%)

□ 동점자 처리기준

| 순위 | 처리기준 |
|----|-----------------------|
| 1 | 취업지원대상자(국가보훈) |
| 2 | 장애인 등록자 |
| 3 | 면접전형 중 직업기초능력 점수 고득점자 |
| 4 | 가점을 포함한 서류전형 고득점자 |

□ 전형별 추진일정

| 구 분 | 추진일정 | 주요내용 |
|----------------|-----------------------------------|---|
|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 '25. 10. 28(화)~ '25. 11. 11(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수방법 : 온라인 입사지원서 접수 • 접 수 처 : https://kogastech.recruiter.co.kr • 접수마감 : '25.11.11(화) 15시 ※ 우편 및 방문접수는 받지 않음 |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5. 11. 14(금) | • 서류합격자 개별통보 및 입사지원 홈페이지 공고 |
| 면접전형 | '25. 11. 18(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소 : 한국가스기술공사 인천 액화수소사업소 (인천광역시 서구 중봉대로 306번길 33) ※ 면접장소 변경 시 개별통보 |
| 최종합격자 발표 | '25. 12. 4(목) | • 개별통보 및 입사지원 홈페이지 공고 |
| 임용(사무보조) | '25. 12. 9(화) | • 사업추진 일정에 따라 임용일 변동가능 |
| 임용(운전원) | '26. 1. 2(금) | |

3. 서류제출

| 구 비 서 류 | 제 출 시 기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사지원서(자기소개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원서접수 시 온라인 제출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종학력 증명서 1부 • 직장날인이 반영된 경력증명서(담당업무 기재) •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1부 • 자격증 사본(해당자) 1부 • 취업지원(보훈) 대상자 및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주민등록초본(군경력 기재) 및 주민등록등본 원본 각 1부(생년월일만 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고일 이후 일자로 발급하여 제출 - 주민등록초본 발급시 반드시 군경력을 포함하여 발급 | 면접일 제출 ^{주)} |

^{주)}면접당일 관련서류 미제출 시, 면접응시 불가

4. 유의사항

- 입사지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증빙서류 위·변조, 기재 내용이 증빙서류와 다를 경우 불합격 처리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전형과정에서 응시자가 채용기준에 미달할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청탁 등 부정행위로 인해 합격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당해 합격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합격이 취소된 자는 취소일로부터 5년간 공사 채용에 응시를 제한함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입사지원서와 제출하는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채용 결격사유(인사규정 제5조) 발생 시 불합격 처리, 채용 후 발견 시 채용취소 또는 해고 조치함
- 최종합격자 결정 전 결격사유 확인을 위하여 면접전형 참석자 전원에게 채용결격사유 확인서 징구
- 불합격자의 채용서류 반환 등에 관하여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름
 - (보관기간)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불합격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14일 이내 반환
 - ※ 단,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별도의 요구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는 제외한다.
- 채용담당 부서의 장은 반환 청구 기간이 지나고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하여야 한다.
- 최종합격자 결정 시 예비순위 부여(채용계획인원의 5배수)하여 임용 전 입사포기, 임용 후 6개월이내(임용일 제외, 종료일 포함) 퇴사자 발생, 결격사유 등 발생 시 차순위 총원
- 전형별 채용비리 확인시 피해자 구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전형별로 채용계획인원의 5배수 예비합격자 운영
- 기간제근로자도 영리업무 및 겸업 금지제도 운영 기준 적용 대상이며, 아래 취업규칙에 따른 금지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취업규칙 제8조 금지사항
 - 직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공사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공사에 손해를 초래하는 행위
 2. 공사의 기밀을 누설하는 행위
 3. 사장의 허가 없이 자기사업을 영위하거나 타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행위
 4.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 증여 및 향응을 받거나 금전을 대차하는 행위

5. 불합격자의 이의신청

- 신청방법 : 한국가스기술공사 대외정비사업실 인천 액화수소사업소 채용담당자로 문의
(☎032-570-2505, hjb0201@kogas-tech.or.kr)
- 신청기한 :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 익일까지(최종합격자는 15일간)
- 이의신청 처리대상 : 채용 관련 부정행위 및 불합격자 관련한 이의신청 사항
- 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 : 채용시험과 무관한 문의 및 평가자 개인정보 등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등

6. 결격사유

- 인사규정 제5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9. 공사에 제출한 채용구비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1. 최근 5년 이내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1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 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2025. 10. 28.

한국가스기술공사 사장